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83호서식] <신설 2015.1.15.>

#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성명(법인명) | |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|
| | 상 호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대표자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
| | 주소(영업소) | | | |
| | 전화번호 | (휴대전화: ) | 전자우편주소 | |
| 수입신고번호<br>(제조신고번호) | | | 수입신고일<br>(제조신고일) | |
| 담보종류 | | 현금 [ ], 지급보증증서 [ ], 기타( ) | | |

자동차세 납세담보면세확인(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)

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통관세관명<br>(세무서명) | | | | | | |
| 구 분 | 품 명 | 수 량<br>(리터) |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| | 자동차세 | |
| | | | 세율 | 세 액 | 세율 | 세 액 |
| 납세담보<br>면제대상<br>유류반출 | 계 | | | | | |
| | 휘발유 | | | | | |
| | 경 유 | | | | | |
| | 기 타 | | | | | |

본 납세담보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.

「지방세법」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※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.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)